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이슈리포트 2016-03

학교협동조합과 교육

연구원: 조현경, 주수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목차

I. 배경설명	1
II. 학교협동조합과 교육의 정책적 접점	2
III. 학교협동조합에서 시행되는 교육과 과제	4
IV.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레임	6
V. 구성원별 필요한 교육	7
VI. 학교협동조합 교육 관련한 주요 의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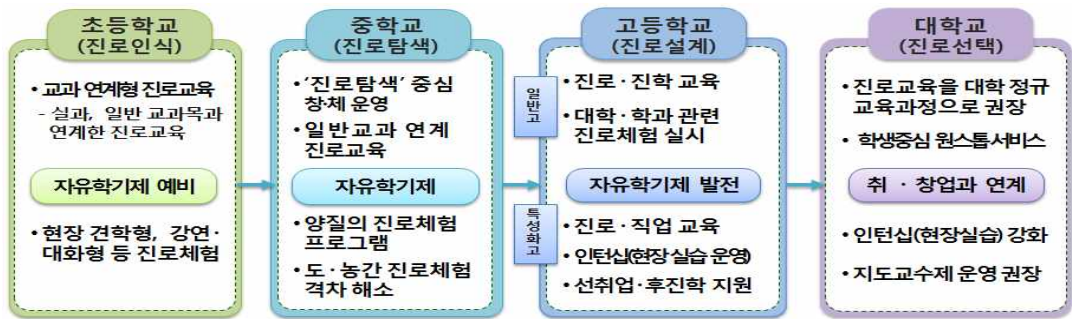
I. 배경 설명

-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직접 경제 사업을 경험해봄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 능력에 걸맞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뉴먼(Newmann, 1991)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의 재생산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식의 산출을 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지식은 의사소통과 창조, 수행을 통해 표현된다.”고 함. 따라서 학생들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유사한 인지 활동-즉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학교협동조합은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실제적인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필요한 다양성과 협업을 통해 발현되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 풍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업종별 운영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있음. 학교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2~3년을 주기로 교체되기 때문임. 학교협동조합이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협동조합들의 운영의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함.

II. 학교협동조합과 교육의 정책적 접점

- 저성장 시대,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있어 진로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창직(創織)의 시대 속에 있음. 진로교육법이 제정·시행('15.12.23.)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4일 발표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에 따라 초·중·고, 대학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련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전담교사와 관련해서도 중·고등학교에 '20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100% 배치하고, 초등학교에는 '16년부터 우선 보직교사로 임명 배치할 계획

그림1. 교육부의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 또한 교육부가 4월 11일 발표한 「산학협력 5개년('16~'20)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산학협력 협동조합 창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창업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내에서 공유·축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대학생·졸업생·교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유사 업종의 가족회사와 대학(산학협력단 및 가족회사 관련 교직원 등)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학교기업과 소규모 지역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등을 제시함.

표1. 교육부가 제시하는 협동조합 창업 모델 예시

구분	사례
협동조합 형태 창업모델 예시	(전남대 사례) 음악과 졸업생, 재학생 6명 협동조합 설립('15), 클래식공연 및 음악교육사업 진행
지역과의 연계 협동조합창업 모델 예시	(전북대 사례) '13.9월 결성되어 대학과 가족회사간 기술교류를 담당하던 '청년CEO클럽협의회'(교수+기업체 등)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식품수출기업 설립 추진중

- 실제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 역시 문제해결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일례로 교과부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통계수업을 실생활과 연계된 조별

프로젝트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언제 보건실에 가장 많이 갈까’, ‘공부시간과 성적은 서로 관계가 있을까’ 등과 같은 주제를 조별로 자료를 수집, 분석해 결과를 포스터 등으로 시각화해 발표함.

- 각 시도교육청 역시 다음 표와 같이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한 조례 및 정책 수립을 하고 있음. 서울과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2015년 제정하였으며, 강원, 경남, 인천, 세종 등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방식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을 세워가고 있음.

표2. 각 시도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조례 및 정책

지역	내용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078호, 2015.11.4.제정) 제2조(정의) 7항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사회적협동조합" 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기본계획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공익적 기여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강원	○ 강원도교육청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5-2-3: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육성법(2012.8.2. 시행) 및 협동조합 기본법(2012.12.1.시행) ※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2016.10.월 현재)
경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협동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복지와 상생의 교육경제공동체”로 정의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수의계약 가능조항 마련 시 방과후사회적협동조합이 학교와 위탁계약등으로 물의를 일으킬것이 예상되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학교협동조합 정의 “ 사회적협동조합 중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조 및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대학 제외) 에 따라 학교 내에 위치 할 것”으로 명시하여, 학교협동조합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인천	○ 민선 2기 교육감 공약 6-4-1 : 교육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 2016 교육협동조합 특화과정 연수 기본계획 : 정책기획조정관-1087 (2016.7.2.)호 ○ 2016. 9. 21.(수) ~ 11. 9.(수) 매주 수요일 15시~18시 연수 진행. ○ 조례제정 준비, 17년 2개 시범학교 진행 예정
세종	○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12.12.1.),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12.8.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15.6.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16.3.14.)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안내('16. 10.) ○ 사회적경제 협의체 구성('16. 10.)

Ⅲ. 학교협동조합에서 시행되는 교육과 과제

- 2015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영림중, 독산고, 삼각산고, 삼성고, 선사고 5개 학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음. 영림중(8회), 독산고(19회), 삼각산고(13회), 삼성고(9회), 선사고(12회)가 이뤄져 총 61회 크고 작은 교육활동이 이뤄졌으며, 학교별 평균 12회가 이뤄졌음. 독산고의 경우 다양한 교육활동의 성과를 모아서 자료집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함.

표3. 학교협동조합 교육통계

학교	회차	참여자수					교육시간		교육비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합계	단위	총	단위	참여자 1인당
영림중	8	920	0	106	625	1,651	60	3,810	10,000,000	6,057
독산고	19	2,053	0	43	0	2,096	146	6,556	4,437,000	2,117
삼각산고	13	804	26	22	0	852	105	2,703	11,500,000	13,498
삼성고	9	156	8	9	0	173	81	1,132	4,810,000	27,803
선사고	12	922	0	105	0	1,027	54	2,570	4,000,000	3,895
합계	61	4855	34	285	625	5,799	446	16,771	34,747,000	5,992

출처: <2015 학교협동조합 연간 보고서>(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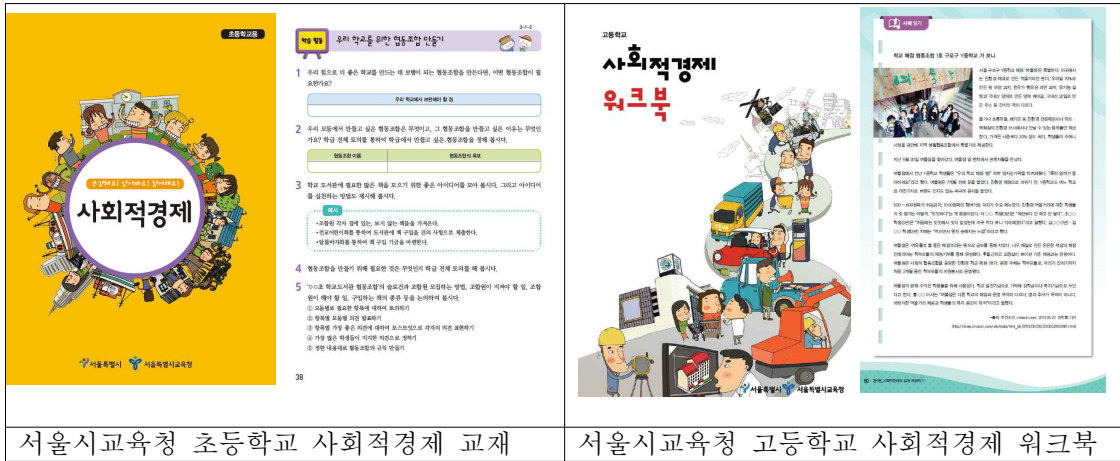
- 이들 교육 활동들을 크게 구분하면, 학교협동조합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준비교육과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의 교육으로 나뉘지고 있음. 이를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4. 학교협동조합 현행 교육체계

구분	항목
준비교육	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에대한 이해 교육
	문제해결능력 향상교육
	연관교육: 생태교육/공정무역교육/식생활교육/윤리적소비교육
프로젝트 실행	학생분과위원회 활동
	학생상호배움활동
	재활용 실습활동
	창업활동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학교협동조합 교육활동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재 개발, 사회적경제 동아리 및 통합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2.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재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사회적경제 교재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사회적경제 워크북

- 다만 교사, 학부모의 경우 아직까지는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멘토 역할 및 학교협동조합 사업 수행능력이 필수적임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과 성장의 경로가 부족함.
- 또한 학생들의 교육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음. 청소년들의 경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에 선생님이나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멘토가 상시적으로 결합되어 활동을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나 충분한 자원연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후 과제임.
- 이에 학교의 일 년 학사행정에 따라 체계적인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학교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나 초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주체가 중심이 된 학교협동조합 모델과 달리 시간이 지나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설립이 되는 경향이 있기에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설계와 운영은 학교협동조합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

IV.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레임

○ 학교협동조합에 필요한 교육프레임을 개괄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표5.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레임

구성원	학생조합원			학부모 조합원			교원			공통
	신입생 조합원 교육	임원 조합원 교육	하계 학교 통합 워크숍	신입 조합원 교육	상반기 신규 임원 교육	동계 리더 교육	정기 교원연수	찾아가는 교원연수	교원연구회	
대상	조합원 가입 이후 학생조합원들	분과위원회 단위의 임원들	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전체	조합원 가입 이전 예비조합원들	매점 실무를 맡은 매니저를 포함한 신규 임원	학교협동조합 학부모조합원 중 리더 후보군 전체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교원 전체	학교 단위 교원연수 시간 활용하고픈 학교	사회적경제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전체	총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픈 학교협동조합
주체	학교 단위	학교 단위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사경센터	학교 단위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사경센터	학교 단위
시기	3~4월	4~5월	하계방학	3월 (학부모 총회 기간 활용)	4~5월	1~2월	동계방학	연중	연중	12월~3월
기간	약 1H	약 1일	1박2일	약 1H	약 4~5H	약 2~3일	5일(30H)	약 1~3H	월 1회	약 1~3H
집행방식	직접사업 •공고에 따라 학교별로 신청 ※ 교육 코디네이팅 지원	직접사업 •공고에 따라 학교별로 신청 ※ 교육 코디네이팅 지원	위탁사업 (연합회 or 특정기관)	직접사업 •공고에 따라 학교별로 신청 ※ 교육 코디네이팅 지원	직접사업 (모집 및 교육)	위탁사업 (연합회 or 특정기관) 예)아이쿱	직접사업 (모집 및 교육)	직접사업 •공고에 따라 학교별로 신청 ※ 교육 코디네이팅 지원	직접사업 (모집 및 실시)	직접사업 •공고에 따라 학교별로 신청 ※ 교육 코디네이팅 지원
재정지원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서울시사경센터 or 서울시교육청(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등)	서울시사경센터

V. 구성원별 필요한 교육

1. 학생

(1) 신입생 조합원교육

- 학교의 특성상 매년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게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교육이 필요함.
- 시기는 3~4월 학기 초에 신입생 대상 학교의 특성상 매년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게 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교육이 필요함.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함께 학교협동조합 활동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
-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경험한 선배들이 있는 경우 학생들 상호간의 소개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효과적임.

(2) 임원 조합원교육

-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분과위원회의 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임원 조합원교육이 필요함.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이 학생들의 다양한 분과위원회 활동이기 때문.
- 4~5월경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작년 분과위원회 사업 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논의를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3) 하계 학교 통합 워크숍

- 여름방학을 이용해 서울시내 학교협동조합 학생들간의 교류 및 협동조합 체험 및 논의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필요.
- 홍동이나 원주 등 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간의 소개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 기획.

그림2. 2016년 하계 서울시학교협동조합 통합 워크숍



2. 학부모

(1) 신입 조합원교육

- 3월달 학부모 총회 기간을 활용하여 새로 학부모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1시간 내외로 해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알리며 조합원 가입 홍보 및 교육 시간을 마련함.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협동조합을 소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상반기 신규 임원 교육

- 총회 전후로 새로 임원이 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임원 교육. 특히나 협동조합 매점의 경우 새로 일을 맡게 된 활동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노하우 전달이 필요. 따라서 외부 강사보다는 기존 학교협동조합 임원들이 직접 교육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그림3. 2016년 하계 매점 학교협동조합 학부모임원교육



(3) 동계 리더 교육

- 학교협동조합 학부모조합원 중 리더후보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 비교적 학교협동조합 실무로 바쁘지 않은 1~2월 시기에 기획하여 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일년 사업 평가와 함께 내년 사업계획을 하며 자연스럽게 총회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음.

3. 교사

(1) 정기교원연수

- 2015년 하계부터 2016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기교원연수가 진행됨.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및 학교협동조합 기초교육을 통해 각각 1학점의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2016년 부터는 온라인 연수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나, 오프라인 연수도 꾸준히 필요함. 2017년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며 교사들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

그림4. 2016년 2016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원연수



(2) 찾아가는 교원연수

- 학교협동조합이 있는 학교의 경우 담당교사만이 아닌 전체 교원들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개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원연수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교육 기획.

(3) 교원 연구회

- 학교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심인 교사들의 관심과 교육현장과의 접점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2016.7.1부터 <사회적경제교육연구모임>을 시작하여 9월 29일까지 총 4회의 모임을 진행함.
- 교사연구모임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모임 체계로의 편입 등이 필요함.

VI. 학교협동조합 교육 관련한 주요 의견

1. 의견 청취 방법

- 9월 8일 가재울고사회적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학교협동조합 발전방안 포럼 -교육 주제 회의>를 통해 교사, 교육관계자 등으로부터 학교협동조합 관련 의견을 청취함.

2. 주요 의견

(1)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성과

○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와 진로모색

“학교급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1)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영역에 관심을 갖게된 것 2)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하는데 이러한 경험 훈련을 통해 학운위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3) 매점 경영 관련, 판매 매출 수익 등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로의 진로를 탐색하는 동기가 된다. 4) 매점 공간이 학부모들과 소통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5) 생협과 거래, 다양한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을 통해 미래 잠재적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 실패를 통한 성장의 경험이 중요

“학생들과 10개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하면서 경험한 것은 실패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점이다. 이익만이 아니라 손해도 공유하는 것을 경험하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 직접적인 경험과 부딪힘의 중요성

“청소년 전반적으로 관계, 신뢰,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를 종종 발견하한다. 무기력하다, 꿈이 없다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정신노동에 치우쳐 지내는 청소년들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거의 없는 편이다. 협동조합을 통한 노작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교사 관련

○ 교사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성과로 친환경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 등 훈련을 통해 장래 학운위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잠재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다만 교사에 대한 성과나 유인은 없으므로 해결을 요하는 과제이다”

○ 학교협동조합별 찾아가는 교원연수 필요

“이사장, 교장 등이 교체될 때 학교협동조합이 침체기를 맞을 수 있는데 최소한 협동조합 동아리를 맡은 교사는 학교협동조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 대상 교육은 ‘찾아가는 교원연수’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있는 학교는 모두 진행되었으면 한다.”

(3) 교육 방법 관련

○ 교육적 효과가 큰 현장 탐방을 위한 교육 예산 필요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낸 제1의 성과 좋은 것이 ‘현장탐방’이었다. 문제는 예산인데 교육청에 사회적경제 선도학교 예산사업 등과 같이 공모방식의 사업 배정이 필요하다. 구청의 경우도 관련 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 교육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유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때문에 발언권 있는 부서에서 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청 교육지원과보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사경 교육으로 세팅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한다”

○ 학생들간의 상호배움의 중요성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이 비조합원에게 ‘나도 선생님’ 프로그램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이게 가능하려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교과과정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관계설정 필요하다”

○ 지역 내 현장탐방의 조직화 필요

“현장탐방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고 진로체험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나가는 등 학교협동조합이 마을과 연계해서 가고 있다. 사회적경제센터 등이 조직화하거나 정례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학교협동조합 교육 연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학교협동조합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신설 학교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받으려고 해도 정보, 서류구비, 예산집행도 힘들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팀이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